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1나234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1나2345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가단500517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재국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강동훈, 홍기웅

변론종결 2021. 11. 5.

판결선고 2021. 12. 24.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가단500517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5. 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의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7째줄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당심 변론종결일'로 수정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한 추가 주장에 대하여 새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에 기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6. 13. 승소판결을 받은 후 C의 재산을 조회하고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2016. 7. 15. 법원으로부터 집행문, 송달 및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았는바, 원고는 그 무렵에 이미 이 사건 분할협약에 따른 사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1.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에 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6. 7. 14.경 집행문과 송달 및 확정증명원을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 일시에 원고가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및 C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은 일시는 2019. 12. 26.경인바 원고로서는 그 무렵에야 이 사건 분할협약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② 원고가 위와 같이 집행문 등을 발급받은 2016년경에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C 명의로는 재산이 없었다.

③ 이 사건 사해행위는 상속재산분할협약의 형태로 이루어져 피상속인의 사망이 전제가 되는 등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모두 부담한 후 그 부동산에서 모친 F과 동거하며 F을 부양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였기 때문에 망인 사망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일 뿐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피고의 선의 주장을 보충한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먼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망인과 공동명의로 J와 사이에, 2012. 10.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11,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G(망인의 또다른 상속인)은 2012. 10. 31. 근저당권자를 K은행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60,2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③ 피고는 2015. 3. 4. 근저당권자를 L 주식회사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8,4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④ 위 K은행의 근저당권은 2015. 3. 1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후 모친 F과 함께 거주하면서 모친을 부양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전입한 일시는 2012. 11. 13.인데 반해 피고는 망인 사망 후인 2016. 9. 22. 위 부동산에 전입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②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매수 당시 G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K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후 피고가 G의 위 채무를 갚아주기 위해 L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고 위 K은행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켰으므로 위 부동산의 매수자금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부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G이 그 명의로 대출받아 일부 부담하였다는 것이고, G이 K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일시로부터 약 2년 5개월이 경과한 이후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G 명의의 근저당권이 그 무렵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매수자금을 피고가 전부 부담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민, 판사 윤웅기, 판사 신재환

별지